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5년 10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10월 3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증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 본점/ 금융위원회 /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일부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모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분산투자가 어렵거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펀드의 임의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6 년 8 월 1 일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요약정보〉 기준일: 2025.10.20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A8641]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시장 위험 및 투자신탁 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그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선별된 한국기업과 한국경제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한화 한국 오퍼튜니티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인 한화 한국 오퍼튜니티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JF Asset Management Limited만의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한 투자결정과정에 따라 선별된 한국기업과 한국경제 관련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전세계 각 지역 투자 전문가들의 기업탐방, 지역리서치 및 분석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는 JF Asset Management Limited만의 기업분석시스템인 「JFirst Note」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세계 또는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서 한국시장의 상대적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각도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95% + 매경BP CD 5%
분류	투자신탁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 / 개방형 / 추가형 / 종류형 /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및 비용(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없음	1.532	0.950	1.66	1.5320	157	322	495	868	1,9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없음	1.057	0.475	1.34	1.0570	108	222	342	599	1,363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4/02/28~ 2025/02/27	2023/02/28~ 2025/02/27	2022/02/28~ 2025/02/27	2020/02/28~ 2025/02/27	2012/02/28~ 2025/02/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	12.02.28	1.29	4.90	-1.00	6.17	2.66
비교지수(%)		0.14	4.48	0.00	4.94	2.18
수익률변동성(%)		15.14	14.60	15.33	18.41	16.15

* 비교지수 : KOSPI 95% + 매경BP CD 5%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조일웅	1972	책임(본부장)	9	1,549	-	-	62.02	40.68	20년 5개월
노현주	1986	부책임(매니저)	14	580	51.17	29.64			3년 8개월

* 기준일: 2025년 10월 20일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아니하며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재산의 성과는 환 관련 규제 법규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무증권의 가격은 현행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상황에 미루어 볼 때,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위험은 높았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한화자산운용㈜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m) [모투자신탁 위탁운용사: JF Asset Management Limited]

모집기간	계속판매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없음
효력 발생일	2025년 10월 30일	존속 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를		

<table>
<tr><td></td><td>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
기구의
종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어 총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판매수수료선취형 및 판매수수료후취형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td></tr>
<tr><td rowspan="2">판매
경로</td><td>온라인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기타</td><td>개인연금
(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	**A86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A90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A904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 분류됩니다.

나. 운용자산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로 분류됩니다.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마. 특수형태 표시: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클래스)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모자형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됩니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상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과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1부의 내용 중 4.가. "모집의 내용"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주) 모집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및 종류별(클래스별) 가입자격은 제 2 부의 내용 중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별로 모집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모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모집의 규모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나. 모집방법 및 내용: 이 투자신탁의 모집(매출)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모집장소: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anwhafund.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인수인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의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상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	**A86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A90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A904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2.02.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투자신탁 최초설정
2013.02.27	투자신탁 결산
2013.05.06	연금저축계좌 도입에 따른 변경 등
2014.02.27	투자신탁 결산
2015.02.27	투자신탁 결산
2016.02.27	투자신탁 결산
2016.07.02	투자위험등급 체계 개편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16.07.05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08.01	세법개정에 따른 정정 (이익분배금 유보 등) 증권거래소 거래시간연장에 따른 매입, 환매, 전환 청구 마감시간 변경
2017.02.27	투자신탁 결산
2017.04.17	펀드명 변경
2018.06.04	- 집합투자업자 변경(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투자신탁 명칭 변경,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2018.08.31	비교지수 변경(KOSPI 100% =〉 KOSPI 95% + 매경BP CD 5%) 운용전문인력 변경(양우석 =〉 김서영)
2019.03.12	- 정기결산에 의한 갱신(수익률 변동성 : 15.33% =〉 11.67%) -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 =〉 3등급)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9.08.01) 반영
2020.03.20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2021.03.11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 =〉 2등급)
2023.03.09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수익률 변동성 변경 (20.39% → 20.58%) - 펀드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관련 항목 및 문구 업데이트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4.03.14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위험등급 변경(2등급 → 3등급) - 수익률 변동성 변경(20.58% → 14.29%) - 연금세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변경 반영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4.03.03)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02.20) - 일반사무관리회사 명칭 변경(신한아이타스 → 신한펀드파트너스)

2024.08.30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신한펀드파트너스→하나펀드서비스) (2024.09.02 시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표기)
2025.03.12	- 정기갱신(2025.02.27)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4.03.01)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기준)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 34.37% -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 → 2등급) - 채권평가회사 관련 변경사항 반영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5.02.27)
2025.10.30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서영 → 조일웅)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 (- → 노현주) - 모투자신탁[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서영 → 조일웅)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 (- → 노현주) - 용어변경(제0영업일 → 0영업일)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5 부의 내용 중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기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위탁관련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원화자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주식등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합니다), 조사분석업무 및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JF Asset Management Limited 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주) 집합투자업자 및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의 내용 중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및 "2. 운용관련 업무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25년 10월 20일)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단위: %)				주요 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본부장)	조일웅	1972	9	1,549	-	-	62.02	40.68	- 운용경력년수: 20년 5개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 Diego 경영학 / 대학원(MBA) - LG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 - 메리츠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 - 한화자산운용(2023.12 ~ 현재)
부책임 (매니저)	노현주	1986	14	580	51.17	29.64			- 운용경력년수: 3년 8개월 -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경제학 - York University 경제학 석사, Columbia University 통계학 석사 - 한화자산운용(2018.07 ~ 현재)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간 변경내용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25.10.30	김서영	조일웅

다.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간 변경내용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25.10.30	-	노현주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기준일: 2025 년 10 월 20 일)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단위: %)				주요 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본부장)	조일웅	1972	9	1,549	-	-	62.02	40.68	- 운용경력년수: 20년 5개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 Diego 경영학 / 대학원(MBA) - LG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 - 메리츠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 - 한화자산운용(2023.12 ~ 현재)
부책임 (매니저)	노현주	1986	14	580	51.17	29.64			- 운용경력년수: 3년 8개월 -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경제학 - York University 경제학 석사, Columbia University 통계학 석사 - 한화자산운용(2018.07 ~ 현재)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의 원화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주)]

성 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John Cho	- JF Asset Management Limited (2011.06 ~ 현재) -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2007.04 ~ 2011. 06) - 우리투자증권 (2005.03~ 2007.04)

주) 모투자신탁의 원화자산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어 총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판매수수료선취형 및 판매수수료후취형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	60% 이상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자산총액의 7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90% 이상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②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장외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파생상품시장 또는 법 제 5 조 제 2 항에 의한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으로서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단,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

		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④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⑤ 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국내주식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7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전자등록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것("국내주식")
② 해외주식	1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주식"의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주식")
③ 파생결합증권	30% 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증권")
④ 채권	3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채권")
⑤ 해외채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채권")
⑥ 자산유동화증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자산유동화증권")
⑦ 어음 등	30% 이하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어음 등")

⑧ 해외어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어음 등”의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어음”)
⑨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파생상품”)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장내파생상품”)
⑩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장외파생상품”)
⑪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총액의 100% 이하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의 총액이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⑫ 수익증권	5% 이하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5%이하(자산총액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0%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0% 이하(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
⑬ 증권 대여	증권총액의 3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30% 이하
⑭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총액의 3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30% 이하
⑮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 이하	상기 ①부터 ⑤ 및 ⑦부터 ⑧까지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⑯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⑰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자산총액의 30% 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⑱ 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부터 ⑫까지 및 ⑰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⑮까지 및 ⑰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① 단기대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 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② 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③ 파생상품매매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매매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③부터 ⑤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③부터 ⑤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인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① 단기대출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②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ㅇ자산총액의 100%이하: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이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에 한함),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ㅇ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③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⑥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 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⑨ 집합투자업자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능.
⑩ 후순위 채권	모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② 및 ⑥부터 ⑧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부터 ④까지 및 ⑥부터 ⑧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그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선별된 한국기업과 한국경제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JF Asset Management Limited만의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한 투자결정과정에 따라 선별된 한국기업과 한국경제 관련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전세계 각 지역 투자 전문가들의 기업탐방, 지역리서치 및 분석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는 JF Asset Management Limited만의 기업분석시스템인 「JFirst Note」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세계 또는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서 한국시장의 상대적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각도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적합한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의 변경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익자에게의 통보 등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JF Asset Management Limited** 에게 위탁됩니다.

비교지수: KOSPI 95% + 매경BP CD 5%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본 문서 작성기준일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자투자신탁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익은 이 투자신탁을 통하여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투자의사 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모든 위험이나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니며, 향후 투자환경의 변화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투자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재산의 성과는 환 관련 규제 법규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무증권의 가격은 현행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상황에 미루어 볼 때,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위험은 높았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분산 위험	모투자신탁은 고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보유종목의 측면에서 다양화되어 있더라도, 수익자들은 모투자신탁이 그 투자대상국가의 상황악화로 인한 가격변동에 더 많이 노출되어, 광범위한 투자신탁, 예컨대, 글로벌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변동이 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등 제도적 위험	모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모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US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에 포함되어 제정된 FATCA에 의하면,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14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특정한 미국 원천소득(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및 이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는 미국 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매각수익 총액(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이 발행한 지분·채무증권)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미국 원천징수가 부과됩니다. 미국 재무규정(US Treasury Regulations) 하에서는 FATCA는 미 국세청(IRS)과 외국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용되고, 이에 따라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투자신탁의 특정 투자자(FATCA에 따라 제정된 미국 재무규정상의 특정 미국인 또는 특정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의 지분율 및 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련된 미국 세금보고에 동의하게 됩니다.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Model 1 정부간 협약(이하 "한국 IGA")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따르면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대한민국 현지의 지도에 따라 시행되는 FATCA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 요구됩니다. 한국 IGA는 미국 재무규정상 FATCA 요구사항을 수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 국세청에 전달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유사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FATCA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2017년까지는 모투자신탁의 경우 미국 원천 수입에 대한 30%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투자신탁 또한 투자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지급에 관하여 FATCA 원천징수를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현재 FATCA를 준수하고자 하나,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FATCA의 준수가 보장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일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에 따른 원천징수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투자신탁에 지급되는 미국원천 지급금에 대하여 FATCA에 따른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FATCA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 국세청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의도되거나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추징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자신의 FATCA 지위와 FATCA 도입의 효과와 관련하여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금융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모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집합투자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매입/환매청구일과 매입/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환매청구일로부터 매입/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펀드규모 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모투자신탁의 자산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문서 제2부의 내용 중 '11.나.(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위험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34.37%]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 기준은 한화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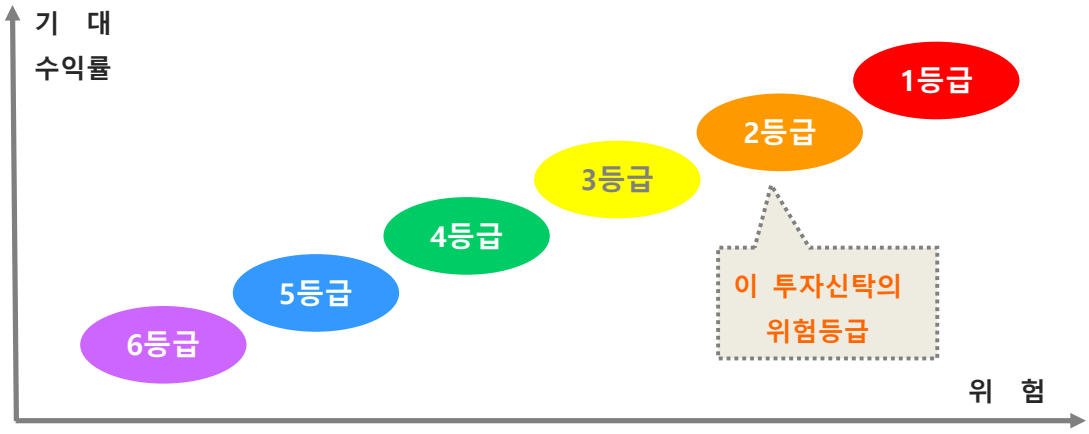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상기의 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급	신규 및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레버리지 수준, 환위험(환헷지 50% 미만 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일간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직접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www.hanwhafun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1)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2)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정책에 따라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류(클래스)	가입자격
C 클래스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E 클래스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투자자가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주):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투자자가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주):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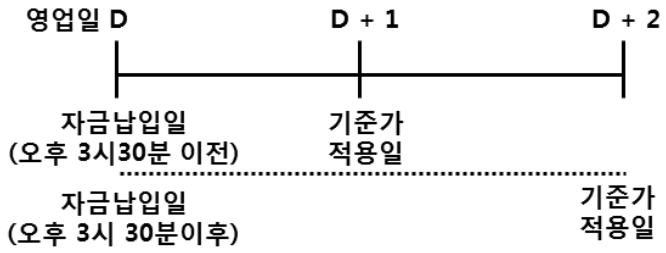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위한 영업일의 산정은 첨부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상 영업일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로 합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판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수익자가 15시30분 (오후 3시30분) 이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주1,2)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15시30분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주1,2)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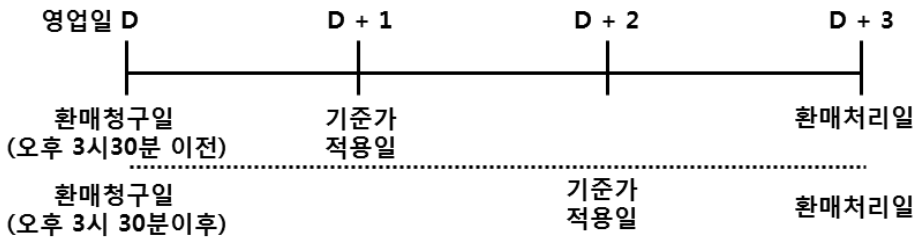

주 1)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2)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첨부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상 영업일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 [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 [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경우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과 신탁계약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주)로 인하여 환매금액의 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날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기간 동안에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으로부터 분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증권의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주)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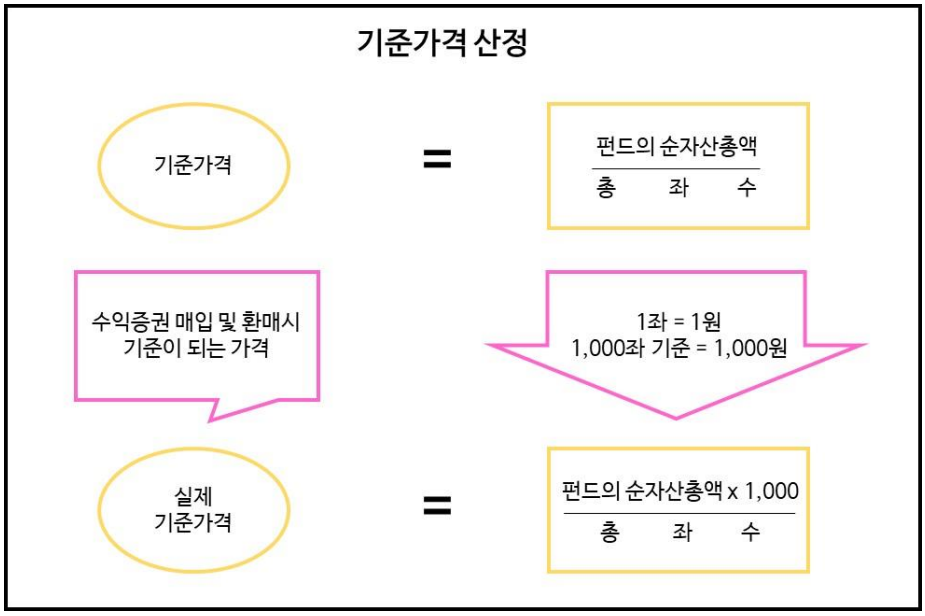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종가괴리율주1)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종가괴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비상장주식,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취득가격 2.거래가격 3.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감정평가업자,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1) 종가괴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수익증권의 종류(클래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해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0.540	0.950	0.025	0.017	1.5320	-	1.532	1.66	1.5320	0.09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0.540	0.475	0.025	0.017	1.0570	-	1.057	1.34	1.0570	0.0905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	사유발생시(주1 참조)	-	-	-	사유발생시(주2 참조)

주 1) 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168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 기타비용 종류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예상수수료 및 보수는 투자기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

(단위: 천원)

종류 수익증권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157	322	495	868	1,9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108	222	342	599	1,363

주)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및 모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보수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기의 표는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수수료, 보수 및 비용에 관한 확정적 자료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금전으로 분배하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익금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 설명은 본 문서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한국법과 세무관행에 근거한 것이며 그 내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이 한국 거주자인 개인임을 전제로 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의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은 한국 세제 목적상 도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신탁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이 몇몇 외국 법역에 투자함으로 발생하는 투자처분으로 인한 이득, 기타 소득은 소득세, 원천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세법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목적상, 법에 따른 투자신탁은 법인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환급됩니다.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

-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 등 투자재산의 매입과 보유에 관련하여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기타 세금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투자신탁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한국에서 부과된 증권거래세,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는 면제 내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이 분배하는 이익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 이익은 거주자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5)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합니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사항은 판매회사의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설정약관" 또는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납입요건</td><td>가입기간 5년 이상, ① 및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①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td></tr>
<tr><td>연금 수령요건</td><td>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td></tr>
<tr><td>세액공제</td><td>
<table>
<tr><th>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th><th>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포함)</th><th>세액공제율</th></tr>
<tr><td>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td><td rowspan="2">600만원
(900만원)</td><td>16.5%</td></tr>
<tr><td>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td><td>13.2%</td></tr>
</table>
- 단, 위 납입요건의 ②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내에서 위 표의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됨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됨</td></tr>
<tr><td>연금수령시 과세</td><td>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td></tr>
<tr><td>분리과세 한도</td><td>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단, '24.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td></tr>
<tr><td>연금외 수령시 과세</td><td>기타소득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td></tr>
<tr><td>해지 가산세</td><td>없음</td></tr>
<tr><td>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td><td>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td></tr>
</table>

(연금외수령)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금융정보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 사안에 관한 금융정보자동교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준에 따라 양자간 또는 다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한 관할지들은 해당 관할지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AEOI/CRS에 따른 정보 보고 및 교환의 범위와 적용은 각 관할지 현지의 AEOI/CRS 시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호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영국을 포함한 77개 국가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홍콩은 적절한 국가들과 양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AEOI/CRS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투자자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조세 전문가로부터 각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1기(2022.02.28 ~ 2023.02.2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2기(2023.02.28 ~ 2024.02.2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3기(2024.02.28 ~ 2025.02.2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상태표			
항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2025.02.27	2024.02.27	2023.02.27
운용자산	183,927,358	187,841,886	195,519,519
유가증권	175,779,087	180,184,008	188,314,70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8,148,271	7,657,878	7,204,818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86,643	16,927	15,890
자산총계	184,514,001	187,858,813	195,535,40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873,363	1,353,869	2,967,150
부채총계	1,873,363	1,353,869	2,967,150
원본	132,960,435	136,711,450	153,169,503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49,680,203	49,793,494	39,398,756
자본총계	182,640,638	186,504,944	192,568,259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2025.02.27	2024.02.27	2023.02.27
운용수익	5,340,533	18,806,656	-23,255,734
이자수익	225,613	222,346	136,339
배당수익	3,580,504	4,385,914	4,270,358
매매평가차손익	1,534,416	14,198,396	-27,662,431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2,475,711	2,667,973	2,542,008
관련회사보수	2,475,711	2,667,973	2,542,008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2,864,822	16,138,683	-25,797,742
매매회전율	0	0	0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225,664,269	175,525	0.0778	222,050,602	174,964	0.0788
주식 이외의 증권	0	0	0.0000	0	0	0.0000
장내파생	0	0	0.0000	0	0	0.0000
장외파생	0	0	0.0000	0	0	0.0000
부동산	0	0	0.0000	0	0	0.0000
기타(레포,대차,콜 등)	0	0	0.0000	0	0	0.0000
합 계	225,664,269	175,525	0.0778	222,050,602	174,964	0.0788

주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원, %)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997	97,359,564	2,380	128,292,982	175,446,133	73.12386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13기	제12기	제11기
	2025.02.27	2024.02.27	2023.02.27
운용자산	183,927,358	187,841,886	195,519,519
현금및예치금	8,148,271	7,657,878	7,204,818
현금및현금성자산	8,148,271	7,657,878	7,204,818
유가증권	175,779,087	180,184,008	188,314,701
수익증권	175,779,087	180,184,008	188,314,701
기타자산	586,643	16,927	15,89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571,534	0	0
미수이자	15,109	16,927	15,890
자 산 총 계	184,514,001	187,858,813	195,535,409
기타부채	1,873,363	1,353,869	2,967,150
미지급운용수수료	232,144	246,657	259,327
미지급판매수수료	328,261	339,414	364,627
미지급수탁수수료	10,673	11,359	11,928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7,224	7,701	8,074
미지급이익분배금	1,295,061	748,738	2,323,194
부 채 총 계	1,873,363	1,353,869	2,967,150
원 본	132,960,435	136,711,450	153,169,503
이익잉여금	49,680,203	49,793,494	39,398,756
자 본 총 계	182,640,638	186,504,944	192,568,259
부채 및 자본 총계	184,514,001	187,858,813	195,535,409
총좌수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	125,890,543	129,565,317	145,300,164
총좌수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	81,007,406	77,601,806	92,032,452
총좌수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	51,953,029	59,109,644	61,137,051
기준가격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	1.435.72	1.425.12	1.314.38
기준가격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	1.363.85	1.353.74	1.247.82
기준가격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	1.388.93	1.377.99	1.271.37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13기	제12기	제11기
	2024.02.28 ~ 2025.02.27	2023.02.28 ~ 2024.02.27	2022.02.28 ~ 2023.02.27
운용수익(운용손실)	5,340,533	18,806,656	-23,255,734
투자수익	3,806,117	4,608,260	4,406,697
이자수익	225,613	222,346	136,339
배당금수익	3,580,504	4,385,914	4,270,358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644,001	21,284,340	80,207
지분증권매매차익	566,120	11,754	80,207
지분증권평가차익	4,077,881	21,272,586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109,585	7,085,944	27,742,638
지분증권매매차손	933,844	3,008,063	908,806
지분증권평가차손	2,175,741	4,077,881	26,833,832
운용비용	2,475,711	2,667,973	2,542,008
운용수수료	1,003,148	1,074,103	1,026,144
판매수수료	1,395,201	1,510,941	1,436,706
수탁수수료	46,130	49,425	47,187
사무수탁수수료	31,232	33,504	31,971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한화연금	2,864,822	16,138,683	-25,797,742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한화연금	22.22	111.17	-185.6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펀드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2022/02/28 ~2023/02/27	80	116	12	16	0	0	92	116
	2023/02/28 ~2024/02/27	92	115	4	6	19	24	78	105
	2024/02/28 ~2025/02/27	78	105	3	5	0	0	81	1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2022/02/28 ~2023/02/27	56	83	10	13	5	6	61	79
	2023/02/28 ~2024/02/27	61	78	6	8	8	11	59	82
	2024/02/28 ~2025/02/27	59	81	7	10	15	20	52	73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단위: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24/02/28~ 2025/02/27	2023/02/28~ 2025/02/27	2022/02/28~ 2025/02/27	2020/02/28~ 2025/02/27	2012/02/28~ 2025/02/27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84	6.50	0.13	7.79	4.25
비교지수	0.14	4.48	0.00	4.94	2.18
수익률변동성(%)	15.12	14.58	15.31	18.38	16.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1.29	4.90	-1.00	6.17	2.66
비교지수	0.14	4.48	0.00	4.94	2.18
수익률변동성(%)	15.14	14.60	15.33	18.41	16.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1.77	5.40	0.00	6.68	4.47
비교지수	0.14	4.48	0.00	4.94	2.60
수익률변동성(%)	15.13	14.59	15.33	18.40	16.91

주1) 비교지수 : 비교지수: KOSPI 95% + 매경BP CD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비교지수는 2018년 08월 31일자로 KOSPI에서 KOSPI 95% + 매경BP CD 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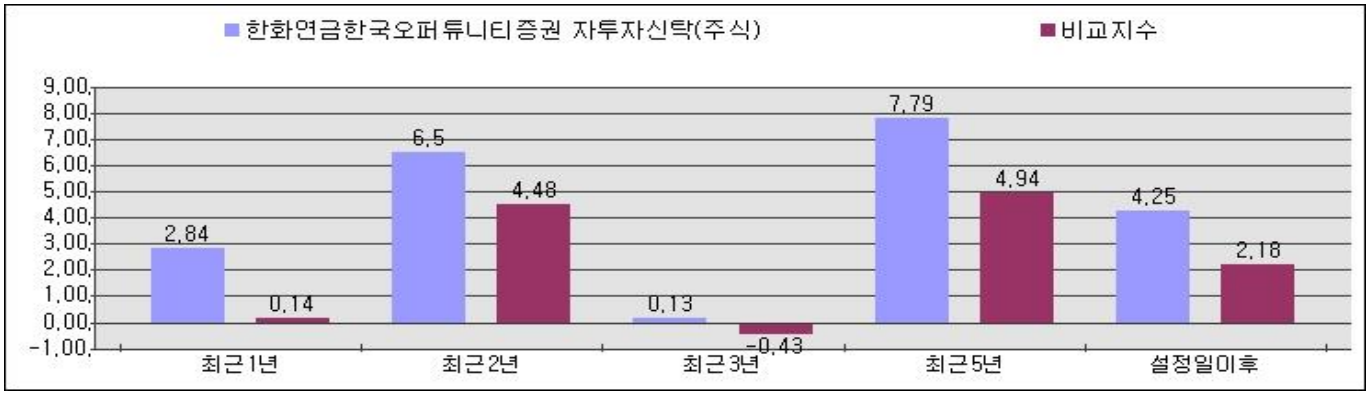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4/02/28~ 2025/02/27	2023/02/28~ 2024/02/27	2022/02/28~ 2023/02/27	2021/02/28~ 2022/02/27	2020/02/28~ 2021/02/27
한화연금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85	10.31	-11.52	-3.44	50.17
비교지수	0.14	9.03	-9.58	-10.55	44.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	1.29	8.66	-12.86	-4.94	48.02
비교지수	0.14	9.03	-9.58	-10.55	44.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	1.77	9.17	-12.45	-4.48	48.75
비교지수	0.14	9.03	-9.58	-10.55	44.17

주1) 비교지수: KOSPI 95% + 매경BP CD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2월 27일 기준 /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64,848	0	0	0	0	0	0	0	0	468	933	66,250
	(97.88)	(0)	(0)	(0)	(0)	(0)	(0)	(0)	(0)	(0.71)	(1.41)	(100)
자산합계	64,848	0	0	0	0	0	0	0	0	468	933	66,250
	(97.88)	(0)	(0)	(0)	(0)	(0)	(0)	(0)	(0)	(0.71)	(1.41)	(100)

주 1) ( )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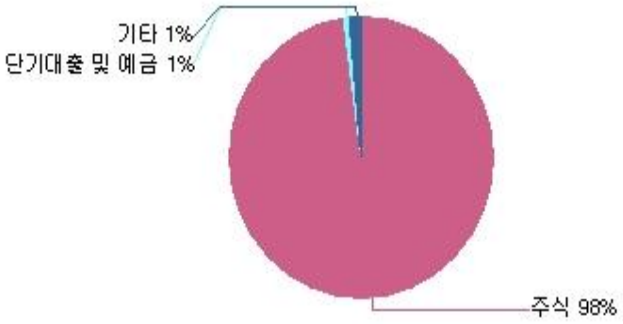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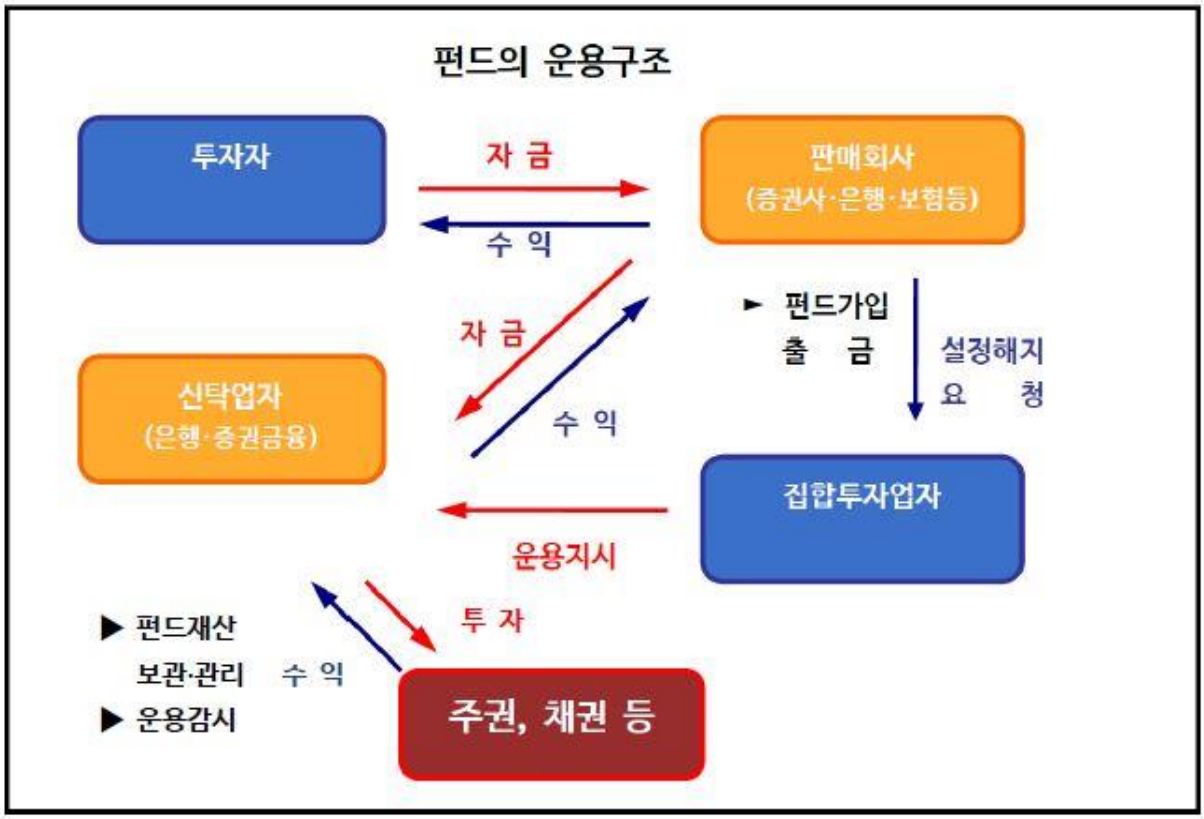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푸르덴셜 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 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1조 700억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36기 (23.12.31)	제35기 (22.12.31)	항목	제36기 (23.1.1 ~23.12.31)	제35기 (22.1.1 ~22.12.31)
자 산			영업수익	131,627	139,376
현금및현금성자산	64,128	71,700	영업비용	97,521	105,389
예치금	10,704	1,077	영업이익	34,106	33,98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77,506	240,590	영업외수익	5,018	22,4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5,992	29,896	영업외비용	1,767	60,629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042,559	955,577	법인세차감전	37,357	-4,219
대출채권	2,340	1,712	법인세비용	7,675	-655
유형자산	13,008	8,910	**당기순이익**	**29,682**	**-3,563**
무형자산	2,995	4,665			
이연법인세자산	10,828	10,340			
기타금융자산	63,789	54,950			
기타자산	1,688	1,369			
자 산 총 계	**1,415,537**	**1,380,785**			
부 채					
예수부채	10,691	1,121			
차입부채	-	-			
충당부채	1,151	952			
순확정급여부채	-1,912	-3,127			
당기법인세부채	3,826	11,060			
이연법인세부채	-	-			
리스부채	9,550	4,766			
기타금융부채	16,020	15,513			
기타부채	1,001	1,250			

부 채 총 계	**40,327**	**31,536**			
자 본					
자본금	1,070,000	1,070,000			
기타불입자본	3,459	3,459			
기타자본구성요소	-2,008	927			
이익잉여금	303,758	274,863			
자 본 총 계	**1,375,209**	**1,349,24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415,537**	**1,380,785**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2.27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48,350	66,518	11,278	0	34,885	10,369	0	36,572	112,328	11,206	70,908	402,41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원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주식등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합니다), 조사분석업무 및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JF Asset Management Limited'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집합투자업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변경절차에 따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회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JF Asset Management Limited
설립일	1974 년 11 월 26 일
회사주소	21/F Chater House, 8 Connaught Road, Central, Hong Kong 연락처: (852)2842-7630 팩스: (852)2501-0375
JF Asset Management Limited는 1974년 홍콩 증권선물거래 감독위원회에 의해 자산 운용허가를 받았으며 2013년 12월 31일 현재 49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02) 2073-7114

홈페이지 주소	www.kbstar.com

(2)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회사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02) 6714-4600
홈페이지	www.hanais.com

* 2024.09.02일자로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신한펀드파트너스㈜에서 하나펀드서비스㈜로 변경.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자산평가	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 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아래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부분 참조)은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만 구성되는 수익자총회에 위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 (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현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며,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투자신탁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신탁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

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되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투자자에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하"기준일")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매매회전율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 제5항에 정해진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에 정해진 사항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 (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모투자신탁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 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또한 판매회사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 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기간 (2024.02.28 ~ 2025.02.27)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table>
<tr><th>구 분</th><th>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th></tr>
<tr><td>가.증권거래</td><td rowspan="2">
<table>
<tr><th>평가항목</th><th>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운용 기여도)</th><th>주문집행능력</th><th>비용 또는 수익</th><th>합계</th></tr>
<tr><td>항목 가중치</td><td>60%</td><td>20%</td><td>20%</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 B(8 점), C(6 점), D(4 점), 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td></tr>
<tr><td>나.장내파생상품 거래</td></tr>
</table>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